

의안번호	2200319
의 퇴 인	황명선의원
회 답 일	2024. 7. 1.
추 계 번호	24B0633
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‘인삼의 수확 후 관리기술’을 마련하고 「표준인삼경작방법등」에 ‘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준’을 반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,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안 제8조(경작방법 및 지도 등)	80	—	—	—	—	80	16

자료: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신설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<u>종합적인</u>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<u>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</u> 을 위하여 <u>필요한 조치</u> 를 하여야 함(제2항)	
2	안 제5조 신설 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인삼 및 인삼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6조(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(이하 “전문연구기관”이라 함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4	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(경작방법 및 지도 등)	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과 수확 후 관리기술(이하 “표준인삼경작방법등”이라 함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(제1항) ※ 수확 후 관리기술 마련	재량·의무규정
		농촌진흥청장은 표준인삼경작방법등을 고시함에 있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<u>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반영</u>하여야 함(제2항) ※ 농산물우수관리기준(GAP) 반영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 신설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미대상 － (제1항) 현재 법 제3조에 따라 「인삼산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* 최근 종합계획은 「인삼산업종합계획(’22~’26)」으로 연구용역 예산은 444백만원, 수행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(사)고려인삼학회
	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(제2항) 현재 ‘인삼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’의 구체적 내용을 예상할 수 없으나, 예를 들어 시장격리(의무매입)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－ 다만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①적정가격(목표가격)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지 여부, ②적정가격 도달에 필요한 시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장격리 물량과 정부(지자체) 구매가격 등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나, 관련 선행 연구 및 데이터 부재 등으로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불가함(농림축산식품부) ※ [참고자료 1] 인삼산업 및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참고
2	안 제5조 신설 (전문인력의 양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교육 비용(인건비, 강사료 등)에 대한 지원범위,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 등이 예상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(농림축산식품부) -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, 업무범위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비지원 사업 및 지원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가 불가함(농림축산식품부)
3	안 제6조(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)		
4	안 제8조(경작방법 및 지도 등)	○	농촌진흥청 제출자료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경작방법 및 지도 등—수확 후 관리기술 마련 및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반영(안 제8조)

-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(GAP) 제도 운영중
- **농산물우수관리제도**(GAP, Good Agricultural Practices): 작물의 재배환경, 재배과정,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,

중금속 등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국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¹⁾

- 2024년 5월 기준으로 312개 품목, 12,595건 인증²⁾

— (인증품목) ('21) 298개 → ('22) 306 → ('23) 311 → ('24.05.) 312

— (인증건수) ('21) 11,278건 → ('22) 11,888 → ('23) 12,416 → ('24.05.) 12,595

※ [참고자료 2]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 현황



[그림] GAP 인증표시

- 본 추계는 농촌진흥청장이 '인삼의 수확 후 관리기술'을 마련하고 「표준인삼경작방법등」에 '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준'을 반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,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³⁾

-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「표준인삼경작방법」에 인삼 수확 후 관리기술 마련 및 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준 반영을 위해서는 기존 자료의 체계화 및 최신 연구성과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함

— 용역과제 산출: 80백만원 = 40백만원 × 2과제

— 1개 과제당 세부산출내역: 인건비 16백만원, 소요경비 16백만원, 일반관리비 등 8백만원

- 따라서 추계 첫해인 2025년에 해당 기술 마련 및 GAP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해당 비용은 농촌진흥청 제출자료에 따라 8,000만원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농촌진흥청장이 '인삼의 수확 후 관리기술'을 마련하고 「표준인삼경작방법등」에 '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준'을 반영하는 경우, 추

1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, 「농산물우수관리(GAP) 교육용 리플릿」, 2023.7.

<<https://www.gap.go.kr/portal/main/main.do>>

2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, 2024년 5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이력추적등록 현황, 2024.6.5.

3) 농촌진흥청에서는 ①세척수삼 품질관리 기술 매뉴얼, ②인삼 GAP 생산가이드, GAP 자율점검표, 인삼 위생관리기술 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인삼 세척 방법과 품질관리 기술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중

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수확 후 관리기술 마련 및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반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인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마련	40	—	—	—	—	40
농산물우수관리(GAP) 기준 반영	40	—	—	—	—	40
추가재정소요	80	—	—	—	—	80

자료: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인삼산업 및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인삼 생산 현황

- 인삼농가는 2022년 기준, 18,236호(재배면적 14,734ha)로 ①계약재배농가 10,404호(57.1%), ②비계약재배 농가 7,832호(42.9%)로 구성
 - 총 생산량은 22,020톤, 생산액은 '22년 7,710억원

□ 정부가 추진 중인 인삼 정책 현황

- (수급) 일반 수삼 가격은 '19년 이후부터 하락하였으나 '22년 일시 반등 이후 하락세 둔화, 파삼 가격은 지속 낮은 수준
 - * 수삼 가격(10뿌리, 750g): ('19)32,154원 → ('21)27,132 → ('22)28,972 → ('23.11)27,000
 - ** 파삼 가격(750g): ('19)13,949원 → ('21)8,307 → ('22)6,358 → ('23.11)5,451
 - *** 건강기능식품 간 경쟁 심화, 주 소비층 고령화 등에 따른 인삼 소비 감소
 -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소비 확대 및 경영안정, 중장기적 유통구조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가격 대책 수립·추진('23.3월~)
 -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홍삼 가공업체에 계열화사업 구매자금(융자)을 지원하여 총 9,441톤(전년 +1,037톤) 구매('23)
- (제도) 흑삼 성분기준 설정 등 「인삼산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23.3월),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, 신고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「인삼산업법」* 및 하위 법령 개정
 - *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, '23.6. 공포, '23.12.21. 시행

□ 인삼산업 관련 예결산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1		2022		2023		2024
	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농산물마케팅지원 (3033-351)	농산물 소비촉진 (인삼)	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홍보 및 판촉행사	1,150	1,150	345	345	350	350	—
농식품 소비기반 조성(3041-385)	농산물 소비촉진 (인삼)	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홍보 및 판촉행사	—	—	—	—	—	—	300
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지원 (3033-350)	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 지원 (시설현대화)	인삼 전문 생산·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	69	69	126	—	126	—	126
	인삼특용작물유통 시설지원 (인삼검사소현대화)	인삼 국정검사지원(운영 비, 검사장비 등)	681	681	527	527	527	527	527
이차보전 (1038-301) * 용자규모기준	인삼계열화(계약)* * '23년부터 이차보전으 로 전환	인삼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융자지원	18,216	18,216	18,216	18,216	22,600	22,600	25,100
	인삼계열화(수매)	계약한 수확 물량에 대한 수매자금 융자 지원	23,500	23,500	23,500	23,500	23,500	23,500	53,500
원예시설 현대화 (3034-350)	특용작물시설현대화 (인삼)	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인 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·장 비 지원	1,810	1,810	1,800	1,800	1,800	1,800	1,260
합계								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2]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 현황

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<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 현황: 2006~2024.5월>

구 분	인증 품목	인증 기관	관리 시설	인증건수	농가수	재배면적	생산계획량	농가 증가율	면적 증가율
	개	개소	개소	건	호	ha	톤		
'24.05	312	55	1,050	12,595	122,788	134,641	4,251,943	1.1%	1.3%
'23	311	57	1,038	12,416	122,121	133,699	4,241,464	0.6%	0.6%
'22	306	59	1,001	11,888	121,395	132,884	3,865,853	1.3%	0.4%
'21	298	60	956	11,278	119,824	132,324	3,181,280	4.9%	4.2%
'20	283	63	890	10,362	114,264	126,986	3,003,717	15.4%	13.3%
'19	266	62	817	9,102	99,050	112,106	2,241,973	14.1%	10.1%
'18	241	55	805	7,782	86,789	101,815	2,117,453	0.8%	-1.4%
'17	223	52	799	6,909	86,091	103,270	2,036,860	14.8%	16.2%
'16	174	46	802	6,059	74,973	88,859	1,592,052	39.9%	35.8%
'15	153	44	717	4,019	53,583	65,410	1,068,167	15.7%	11.3%
'14	136	44	681	2,689	46,323	58,763	795,886	0.7%	0.1%
'13	129	48	756	2,499	46,000	58,703	749,274	14.4%	6.3%
'12	110	51	718	1,969	40,215	55,215	691,228	8.3%	11.4%
'11	89	49	606	1,756	37,146	49,548	642,165	7.9%	6.1%
'10	86	45	565	1,459	34,421	46,701	509,931	20.5%	16.5%
'09	59	43	484	1,233	28,562	40,081	434,047	13.5%	8.0%
'08	59	39	417	1,053	25,158	37,129	419,842	49.8%	50.0%
'07	50	31	316	364	16,796	24,754	331,421	359.0%	1702.9%
'06	45	21	190	220	3,659	1,373	101,354		

자료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, 2024년 5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이력추적등록 현황, 2024.6.5.